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4.

발 의 자 : 신장식 · 김선민 · 박은정
차규근 · 김준형 · 강경숙
최혁진 · 서왕진 · 황운하
이해민 · 백선희 · 김재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.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 국회에서 「국회의원 윤리강령」(1991.2.7.) 및 「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」(1991.5.8.)을 제정하여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(1991.5.31.)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바 있음. 하지만,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다시 개정(2018.7.17.)하여 상설로 구성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.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, 위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조항도 삭제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국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.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, 구성에 있

어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등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,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46조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·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운영”을 “구성과 운영”으로 한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선임은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,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49조의2제3항 중 “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”를 “특별위원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)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제3조(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원의 자격심사·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	제46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를 둔다.
<신설>	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선임은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신설>	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,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	⑥ ----- <u>구성</u> 과 <u>운영</u> ----- ----- -----.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